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정이유

- 청원경찰은 근무 장소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처우개선에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5. 검토의견

### 가. 제출배경

- 청원경찰은 고용계약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업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이중적 지위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자들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무상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과 동일하나, 신분은 민간인으로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자로 대우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서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본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원경찰의 복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직무범위
제2조	정의	제7조	교육훈련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휴가
제4조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9조	보수 및 수당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10조	포상

○ 안 제2조(정의)

- 기존 법에 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 범위를 충청북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로 구체화함

○ 안 제3조(책무)

-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관리부서의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규정함. 이는 청원경찰 처우문제에 대한 임용·관리주체의 의무를 일반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 현재 충청북도에는 청원경찰 복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 복무·인사의 경우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나, 제정 목적이 청원 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며, 관리부서의 재량권을 박탈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조례의 제정목적에 반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청원경찰 근무여건 및 위험요소 등의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근무환경,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역시 직장 내 복지의 본질적 요소로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교육훈련)

-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목적 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공백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임

○ 안 제8조(휴가)

- 현재 청원경찰의 휴가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는 퇴직준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퇴직 이후 사회 적응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한 퇴직 전 휴가 제도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청원경찰의 업무 특성 상 당사자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원경찰이 아닌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청원경찰의 상이한 처우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제정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분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붙임: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